

2006. 12. 18(월) 10:00



134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제3차 본회의

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식품진흥기금	3
2. 아림예술제진흥기금	4
3. 체육진흥기금	5
4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6
5. 노인복지기금	7
6.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	7

<의안번호 제2006 - 67호>

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. 11. 21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6. 11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12. 12(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64조 ,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<총괄>

기금명	2006년말 현재액	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7년도말 예상액
		수입	지출	차액(적립)	
6 개	2,308,515	242,929	80,413	162,516	2,471,031
식품진흥기금	11,989	24,300	20,900	3,400	15,389
아름예술제진흥기금	400,000	48,400	18,400	30,000	430,000
체육진흥기금	28,787	2,036	0	2,036	30,823
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384,312	63,800	22,000	41,800	426,112
노인복지기금	952,502	85,280	0	85,280	1,037,782
여성발전기금	530,925	19,113	19,113	0	530,925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▣ 식품진흥기금

- 식품업체·업소의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수입재원은 과징금, 출연금,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지출은 매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2006년 말 현재 11,989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, 2007년도 수입계획은 24,300천원(과징금 15,000천원, 도비보조금 9,000천원, 기금운용이자 300천원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,900천원(도비보조 “손 씻는 시설” 지원 9,000천원, 모범·전통음식점 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 11,900천원)이 지원되며, 집행잔액 15,389천원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검토됨.
- 우수업소지원,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수입금액 범위내의 집행계획으로, 기금운용 지원대상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■ 아립예술제 진흥기금

- 아립예술제 진흥기금은 '96. 10. 14. 조례 제1408호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립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,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,
 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립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음.
- 기금조성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, 2006년말 현재 400,000천원의 기금이 조성 적립되어 있으며,
 -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분야에서는 48,400천원(군비출연금 30,000천원, 적립금이자 18,400천원) 이고
 - 지출분야에서는 18,400천원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한 거창군 아립예술제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음.
- 그러나 아립예술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06년도에 100,000천원이 지원되었고, 2007년도에도 지난해보다 20,000천원이 증액된 120,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볼 때,
 - 1개의 행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(120,000천원) 되고, 기금에서 지원(18,400천원)되는 중복지원의 개연성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
 - 특히, 전체 행사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(부족시 증액편성)만으로도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

- 향후 기금운용 대상사업의 재검토와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비(기금)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체육진흥기금

- 체육진흥기금은 '95. 4. 2. 조례제1358호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주요규정을 살펴보면
 -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
 -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,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.
 - '95년 설치이후 11년이 경과한 2006년도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8,787천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이며
 - 2007년도 수입계획은 사용료와 적립금이자인 2,036천원만 계상하고 지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.
 -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상에 기금사업의 목표액 및 세부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, 현재 군비 출연금도 전무하여 공공시설 사용료와 비교적 적은 기금 이자액만 매년 적립되고 있어, 당초 목적의 기금운용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.
- ※ 참고로 각종 체육대회개최·참가지원 등('07도민체전 158,000천원, 군민체육대회 134,000천원 등)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군비 지원됨.

- 따라서 향후 출연금 확보방안 등 기금 적립액의 확대 및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현 기금운용조례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용·사용(지원)방법, 우수선수 선발지원 기준 등 세부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

-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·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, 수입재원은 군비출연금 및 기금적립금 이자로 조성 운영되고 있음.
- 지원기준(대상)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20만원,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 30만원을,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40만원을 상·하반기 연2회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,
- 2006년 말 현재 384,312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, 2007년도 수입계획은 (군비 출연금 50,000천원, 적립금이자 13,800천원) 63,800천원으로 구성되어, 2007년도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22,000천원으로 되어 있어, 기금운용 지원대상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.

■ 노인복지기금

- 거창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, 2006년 말 현재 952,502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, 2007년도 수입계획은 (군비출연금 50,000천원, 이자수입 35,280천원)85,280천원으로 2007년도엔 당초 기금목표액인 10억원을 상회한 1,037,782천원이 예상되어,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세부지원(지출)계획을 수립하여,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■ 여성발전기금
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, 2006년 말 현재 530,92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,
- 2003년도부터 2006년(출연금 120,000천원)까지 4회에 걸쳐 당초 조성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되어 기금운용 조례상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(지출)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으므로,
- 2007년도에 이자수입액 19,113천원을 여성지위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부분에 지출할 계획으로,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
6. 수정내역 : 해당없음.
7. 삭감조서 : 해당사항 없음.